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2016. 8. 3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8일(목)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월)

4. 관계법규

-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로 변경
- 나. 제2조 제1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 “법 제17조의8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변경
- 다. 제2조 제2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 “법 제18조의2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변경
- 라. 제2조 제3호 벌칙에 관한 조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변경
-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기를 정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안 제2조 각 호의 조례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함은 물론 잘못 표현된 동(同)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약어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 7. 21.~ 8. 1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1.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 조문의 법령근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가.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 나.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으로 하며,
- 다.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2에 의한”=>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 라.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1조”=> “법 제37조”로 한다.로 함

2.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로 띄어쓰기를 함
- 나. **안 제1조** 중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로 하고
- 다. **안 제2조** 중 “각호의”=> “각 호의”로, “기타”=> “그 밖의”로 하며,
- 라. **안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에 따라”로 하고, “시정명령등”=> “시정명령 등”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동(同)조례 제2조 조문의 관련법 근거를 수정함은 물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규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주민등록증의 발급	<p>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p>	<p>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p>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p>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p>	<p>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
벌칙	<p>제21조(벌칙) ① 삭제 <19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p>	<p>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2014.1.2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p>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8일(목)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월)

4. 관계근거

-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
- 나. 안 제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변경
-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기를 정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중 안 제2조 각 호의 조례 내용을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함은 물론 붙여쓰기한 동(同)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 7. 21.~ 8. 1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또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 일부 조항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1.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동(同) 조례 조문의 법령근거를 개정함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로 함

2.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함
- 나.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중 =>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 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 라. 제4조 중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 마. 제5조제1항 중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로 하고,
- 바. 제6조제1항 중 “및 관계 서류”로 띄어쓰기를 함.

3.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 가. 제2조,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 나. 제3조제1항 중 “의하여 보험”을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 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해당”로 하고,
- 라.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1항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음.

○ 동(同)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가입근거 법령을 개정된 「주민등록법」 근거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알기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이해도 향상은 물론 향후 규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구 분	개정전	전부개정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업무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가 공제를 통해 보상

▣ 우리구 업무배상공제 가입현황

- 가입대상 : 통합민원업무 담당자 73명
(동주민센터 70명, 민원여권과 3명)
- 가입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조건(보상한도) : 1청구당 5억원, 연간 10억원이내
- 2016년 공제회비 : 20,013,600원
(기본회비×보상한도액인상계수×공무원수×조정계수)